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4가단802 판결 [건물명도]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5. 3.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사 최아름

별지

부동산 별지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철근 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다세대주택 (8세대)

지층 80.93㎡

1층 80.97㎡

2층 70.40㎡

3층 50.1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 1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호 철근 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27.03㎡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42분의 5

끝.

[별지]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고는 이곳에 사는 임차인입니다. 피고의 잦은 차임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 갱신을 거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려 2022. 9. 20. 전달하였습니다.
2. 피고는 2023. 1. 31. 임대차계약이 종료했음에도 이사 갈 곳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흔번 이상 이사 약속을 어기는 등 명도의무 이행을 할 의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3. 또한 이와 같이 집을 비우지 않는 관계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직전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불이익을 여러 차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개월째 밀린 차임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구위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 끝.

